

논산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101호
------	-------

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3. 6. 8.

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01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6. 8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

1. 제안이유

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남·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 신설(안 제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감사실-4967(2023.5.17.)호]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[복지정책과-15135(2023.5.11.)호]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[예산실-5407(2023.5.8.)호]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5. 4. ~ 2023. 5. 25.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(041-635-3474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3조”를 “제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한 조례」 및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관계 규정을”을 “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성 명
입 자	송 홍 섭
안	황 준 용
자	김 상 은 (746-5243)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</p> <p><u>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</p> <p><u>제3조제1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,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한 조례」</u> 및 <u>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</u>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7조(준용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</u>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3조(지원) ②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결과**가. 추계의 전제**

- 비용추계 기간 : 2023년 ~ 2027년(5년간)
- 새마을회 읍면동 남녀회장 및 지회 회장 등 35명에게 회의 참석수당 지급

나. 추계결과

- 세출 비용 : 63,000천원(12,600천원 × 5년)

구 분	산 출 기 초	금액(천원)
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	35명 × 30천원 × 12개월 = 12,600천원	12,600

3. 작성자

자치행정과장 송 홍 섭

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12,600	12,600	12,600	12,600	12,600	63,000
시 비	12,600	12,600	12,600	12,600	12,600	63,000
세 출	12,600	12,600	12,600	12,600	12,600	63,000
201-01 사무관리비						
◎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	12,600	12,600	12,600	12,600	12,600	63,000
재원 조달	12,600	12,600	12,600	12,600	12,600	63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2,600	12,600	12,600	12,600	63,000
	지방세	12,600	12,600	12,600	12,600	63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

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